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680호

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
(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)

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통합형_산업부)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9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.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·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

***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'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**

□ 참여기업 모집규모(1차) : 산업부 소관 4개 사업, 000개사

*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

*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,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

□ 사업기간 : 2020. 2. 1. ~ 2021. 1. 31. (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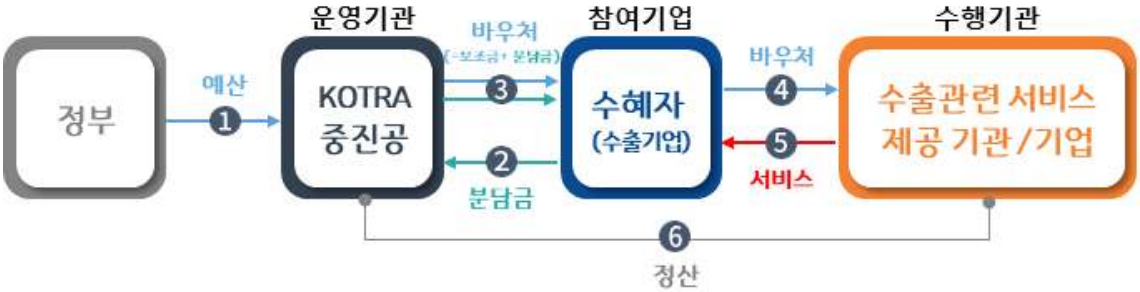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/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
□ 사업내용

○ **(통합형 바우처)**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,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, 소요비용 정산

* 수출바우처의 경우, 통합형 외 "선택형(지사화)" 및 "농수산식품수출"로 구성

◈ [참고] 수출바우처(통합형) 발급 및 정산 흐름도



운영기관이 **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①국고+②기업부담금)**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**③바우처(가상의 쿠폰)를 발급**하고,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**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을 정산**

2. 지원요건 및 내용

□ 지원요건

○ 수출바우처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

신청 제외 대상

◈ 휴·폐업 기업

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자/기업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
◈ **'18-'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**

* 단, '19년 1차 선정기업(사업기간 '19.3월-'20.2월)의 경우, 바우처사용율[1]이 '19.12.8일 기준 46% 이상시 참여가 가능(단 46% 이상 - 57% 미만은 평가시 -5점, 57% 이상은 제재 없음)

* 협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신청일 기준 사용률 및 관리지침 제28조(바우처 잔액처리) 적용

◈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**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**

◈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

1) 사용률 = (바우처 사용액)/(운영기관과의 협약액)
* 바우처 사용액 = 바우처 계약체결액 + 바우처 정산 승인액 *환불, 취소, 정산거절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

□ 2020년 연간 모집 계획(통합형, 산업부 소관 4개 사업)

구분	세부사업명 (기업수)	지원 대상	기업별 국고 지원한도	국고 보조율
수출바우처 통합형	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(00개사)	· (Pre) 후보·예비 중견기업 · (중견 글로벌) 월드클래스 기업·중견기업 · (Post)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	6,000만원-1억원	30%-70%
	소재·부품·장비 선도기업 (00개사)	·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국내 중소·중견기업 ① [진입]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(수출액 10만불 미만) ② [발전]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·중견기업	① 1,400만원 ② 2,500만원-7,000만원	50%-70%
	소비재선도기업 (00개사)	·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·중견기업 · ① [준비] ② [진출] ③ [확대]로 모집	① 1,400만원 ② 2,800만원 ③ 3,850만원	50%-70%
	서비스선도기업 (00개사)	·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·중견기업	2,961만원-2,785만원	50%-70%

◈ [참고] '20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개편내용

현 행(2019년)		개 편(2020년)
세부사업명		세부사업명
수출첫걸음 지원(폐지)	개 편	소재·부품·장비 선도기업 육성
소비재 선도기업 육성	유 지	소비재 선도기업 육성
서비스 선도기업 육성	유 지	서비스 선도기업 육성
월드챔프 육성(통합)		
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	통 합	중견기업 글로벌 지원

※ 이외, 통합형 바우처 內 중기부 및 지자체(경기도) '20년 사업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

3. 참여기업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
□ 신청기간 : '19. 12. 9(월) ~ '19. 12. 27(금) 18시까지

□ 신청서류 :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

□ 지원절차 *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신청·접수	평가·선발	협약체결	바우처발급	사업개시
홈페이지 접수 www.수출바우처.com	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·선발	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	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	수출마케팅 사업 진행
'19.12.9 ~ '19.12.27	'20.1.22	'20.1.22 ~ '20.1.31	'20.1.22 ~ '20.1.31	'20.2.1 ~ '21.1.31

※ 유의사항

◈ 모집 사업 내 **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*하나,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**

* 기업은 1순위,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가능하며,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적용

◈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(바우처 졸업제)에 근거, 각 **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을 제한(동일사업으로 최대 2회-5회 참가가능)**

◈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**중도에 협약을 해지**한 경우 **차년도까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이 상실**되며, 사업기간 종료 후 **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액 규모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금지 또는 평가시 감점 등의 패널티가 발생**

◈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(aT)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나, 수출바우처 선택형 지원사업(지사화, FTA 컨설팅)에는 중복 선정 가능

◈ 해당 산업부 모집사업의 경우, 사업 시작 후 **1개월 이내에 로드맵(사업계획서)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최종 취소** 될 수 있음.

◈ **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*,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, 신남방·신북방 진출계획 보유기업 등 각 세부사업별 우대 사항(가점)** 제공

* 피해기업 확인방법 : 전략물자관리원(japan.kosti.or.kr)의 일본 통제대상품목 및 비민감 품목 참조

◈ '20년 중기부 1차 모집의 경우, 홈페이지 내 **추후 별도 공고 예정이며, 동시 신청가능**

* 단, 산업부 사업에 우선 선정시 중기부 모집사업의 최종 평가·선정에서 제외될 예정

4. 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담당기관 및 부서	전화번호
중견기업 글로벌 지원	KOTRA 강소중견기업팀	02-3460-7237, 7236, 7233
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	KOTRA 소재부품팀 수출기업화팀	02-3460-3257 (발전) 02-3460-3499 (진입)
소비재 선도기업육성	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수출기업화팀	02-3460-3347 (진출·확대) 02-3460-3499 (준비)
서비스 선도기업육성	KOTRA 지식서비스팀	02-3460-7609, 3251
[기타] 시스템 관련	KOTRA 수출바우처팀	02-3460-3425, 3422
[기타] 중기부 사업문의처	중진공 수출바우처 지원센터	055-752-8580

5.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

○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,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

<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>

연번	대분류	정의	내용(예시)
1	**조사/일반 컨설팅**	정보 조사 및 법무·세무·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	파트너·바이어·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, 해외시장 조사, 소비자 리서치, 경쟁제품 동향조사, 해외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, 바이어DB 타겟 마케팅, 경영 멘토링,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,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,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/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2	**통번역**	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	계약/법률 문서, 소프트웨어콘텐츠, 게임/모바일 App 콘텐츠, 비즈니스/기술문서,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*단, 통·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
3	**역량강화 교육**	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	무역실무, 글로벌마케터 양성, 비즈니스 회화, 전략시장 진출, 중국시장 e-러닝, 내부역량강화, 전략물자, CP 실무자 과정,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,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,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4	**특허/지재권/시험**	특허·지재권 취득,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	현지 시험·인허가, 지식재산권 등록, 특허·인증·시험·수출 IP 전략 컨설팅, 지재권 분쟁지원,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/지재권/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5	**서류대행/현지등록/환보험**	수출·무역·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, 환보험 서비스 지원	계약서 작성(지불조건 포함), 통관/선적 필요 서류 작성, 결제관련 서류 작성,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,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·지사·대표처 등록, 현지 입점대행,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, 환보험 등 서류대행/현지등록/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6	**홍보/광고**	기업/제품/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	기업/제품/브랜드 관련 TV·PPL, 신문·잡지 홍보/광고, SNS·검색엔진 마케팅, 바이럴 마케팅,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/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
연번	대분류	정의	내용(예시)
7	**브랜드 개발·관리**	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	수출브랜드, 네이밍, 온/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, 브랜드 정품인증,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/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8	**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**	전시회/상담회/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·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	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,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/세미나/제품시연회,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/설명회/세미나,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/제품설명회, 해외전시회 사전·사후 지원, 해외시장 산업설명회, 판촉전,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, 세일즈랩,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9	**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**	해외진출을 위한 법무·세무·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	회계감사, 세무조사, 세무자문, 법률자문, 법인설립,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,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10	**디자인 개발**	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	외국어 종이/전자 카달로그 제작, 외국어 포장디자인, 외국어 홈페이지(반응형), 모바일용 앱,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, 제품디자인, CI 및 BI 개발 등 수출용 디자인 개발 지원
11	**홍보 동영상**	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	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
12	**해외규격인증**	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·심사·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	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, 위생,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*단,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

※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

1.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.

2.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(소모성비품 구입비 등)는 지원이 불가하며, 디자인개발 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.

6. 세부 사업별 모집내용

가.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

□ **지원목적 :**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·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: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

□ **지원대상 :**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(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) 및 중견기업,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·강소기업(Pre 중견 글로벌),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졸업 기업(Post 중견 글로벌)

□ **지원규모 및 한도**

○ 지원규모 : 00개사

○ 지원한도(국고) : 기업당 6,000만원~1억원 한도 (보조율 30~70%)

< 세부 구성 >

구분	Pre 중견 글로벌	중견 글로벌	Post 중견 글로벌
지원대상	1 중견후보기업 (중견유예기업 제외) 2 예비 중견기업	1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2 중견기업 (중견유예기업 포함)	중견 글로벌 졸업기업
지원기간	최대 3년	최대 5년	최대 3년
매칭펀드 총액	최대 10,000만원	최대 13,000만원(중소) 최대 20,000만원(중견)	최대 20,000만원
국고지원 한도(보조율)	최대 7,000만원(70%)	최대 9,100만원(70%)(중소) 최대 10,000만원(50%)(중견)	최대 6,000만원(30%)
매칭펀드 최저 한도	최소 5,000만원	최소 6,500만원(50%)(중소) 최소 10,000만원(50%)(중견)	최소 10,000만원(50%)

□ **성과지표** : 목표시장 수출액

*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(무역협회) 및 제출 의무

□ **지원자격 요건**

① 중견 글로벌

○ 대상기업 :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혹은 중견기업(중견유예기업 포함)

* 중견기업 증빙 :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제출
* 중견유예기업 :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 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(붙임 1)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(매출액 증빙 제출)
*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

② Pre 중견 글로벌

○ 대상기업 : 중견후보기업(중견유예기업 제외)*, 예비중견기업**

*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시행령 제2조 4항 2호에 해당하는 기업(붙임2 참고)

** 매출액 100억원 이상(수출 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)

③ Post 중견 글로벌

○ 대상기업 : 기존 중견 글로벌 육성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

<우대 사항>

•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우대

<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>

지정 지역	산업	지정시기
전북 군산시	**자동차**	'18년 4월
거제시, 창원시 진해구, 통영시·고성군(이상 경남)영암군·목포시·해남군(이상 전남)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	**조선업**	'18년 5월

•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선정 우대

*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(공고일 기준 2년 內) 등 관련증빙 제출

• 미국의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 대상 선정 우대

* 對이란제재 대상기업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

• 고용 증가기업

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

•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, U-Turn기업, 개성공단 기업, ATC 선정기업 및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기업 우대

□ 추진절차

○ 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평가·선발 → 로드맵 수립 → 사업수행 → 정산

□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**'19. 12. 9(월) ~ '19. 12. 27(금) 18시까지**

○ 홈페이지 신청 www.exportvoucher.com (한글 www.수출바우처.com)

□ 문의처 : KOTRA 강소중견기업팀

○ (사업내용) 조일환 대리 02-3460-7231, ilhwan0831@kotra.or.kr
조현경 대리 02-3460-7233, hkcho@kotra.or.kr

○ (사업신청) 김송이 사원 02-3460-7237, bwv1065@kotra.or.kr
문경진 사원 02-3460-7236, moonkj@kotra.or.kr
이수연 사원 02-3460-7241, soo123@kotra.or.kr

<붙임 1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견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초과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초과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D	
22. 건설업	F	
23. 도매 및 소매업	G	
24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
25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6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7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30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E	
31. 운수업	H	
3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J	
33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
34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N	
3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6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7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38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
39. 금융 및 보험업	K	
40. 부동산업 및 임대업	L	
41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: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<붙임 2>

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매출액 1,000억원 이상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매출액 700억원 이상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22. 수도업	E36	
23. 건설업	F	
24. 도매 및 소매업	G	
25. 음료 제조업	C11	매출액 550억원 이상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2. 운수 및 창고업	H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매출액 400억원 이상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매출액 300억원 이상
41. 부동산업	L	
42. 임대업	N76	
43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: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나. 소재 · 부품 · 장비 선도기업 육성

□ **지원목적 : 소재·부품·장비**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해외 파트너십 발굴,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□ **지원대상 :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국내 중소·중견 기업**

◈ **업종 정의**

- **소재·부품** :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
- **장비** : 소재·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·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

* **소재부품 업종 구분**은 '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 시행령 제2조 참조(참고 : 소재부품종합정보망(www.mctnet.org)→전문기업확인→소재부품 정의 클릭)

◈ **기업규모 구분**

- **중소기업** : 『중소기업 기본법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
- **중견기업** :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
□ **지원규모 및 한도**

구분	1 진입	2 발전	
사업목적	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준비	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	
지원요건	중소기업 중 내수기업(수출 경험 전무) 또는 수출초보기업(전년도('18년) 수출 10만불 미만)	전년도('18년)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, 중견기업	
지원규모	00개사 내외	00개사 내외	
바우처 총액	2,000만원 (중소기업 부담률 : 30%)	5,000만원 (중소기업 부담률 : 30%, 중견기업 부담률 : 50%)	1억원 (중소기업 부담률 : 30%, 중견기업 부담률 : 50%)

* 지원규모는 최종 예산확정시 확정 결정

□ **사업 기간** : 2020. 2. 1. ~ 2021. 1. 31

□ **세부 지원**

○ 기업 업종별 해외 유망시장 분석, 목표시장 및 진출방법 컨설팅
- '진입' 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

○ KOTRA 또는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
-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
- 소재부품장비 특화 서비스 및 토탈 패키지 서비스

□ 신청방법

(1) 홈페이지 신청 www.exportvoucher.com (한글 www.수출바우처.com)
(2) 신청기간 : **'19. 12. 9(월) ~ '19. 12. 27(금) 18시까지**

□ 선정절차

○ 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(1차)계량평가 → (2차)비계량평가* → 선정 → 사업설명회 → 협약체결 → 사업수행 → 정산

* 진입 : 계량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실사로 비계량 평가 수행
발전 :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통해 비계량 평가 수행

○ 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명	내용
1	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, 인쇄 후 서명하여 스캔본 첨부
2	수출 마케팅 사업계획서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3	'15~'18년 재무제표증명원	홈텍스 출력본
4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 통해 확인서 발급

* 상기 구비서류는 필수제출(신청서 화면에서 첨부)이며 제출 거부, 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 제외,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

□ 주요 심사 기준

구분	① 진입	② 발전
공통기준	- 매출액 및 수출액 - 정부 유관기관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이력 - 해외진출 계획 충실도 (제품 및 기술 경쟁력, 시장성, 해외 고객 반응 여부, 타겟시장 구체성 등) -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(국내외 특허, 인증 취득, 상표권 등록 등)	
개별기준	· GCL 테스트 · 회사 및 제품 소개 보유여부 · 수출 희망 제품의 준비도	· 타겟시장 밸류체인 진입가능성 · 해외 마케팅인력 보유 및 전문성

※ 가점 대상

❶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

*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조달내역(공고일 기준 2년 內) 등 관련증빙 제출

❷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

* 소재·부품·장비가 전체 매출액 50% 이상 기업. 인증제출 필요(www.mctnet.org 참조)

❸ 신남방(동남아시아, 서남아시아), 신북방(CIS) 사업계획 보유기업

* 사업신청시 계획서상 목표시장으로 판단 (별도자료 불요)

- 신남방 :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부르나이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, 인도
- 신북방 : 러시아, 중국, 몽골, 카자흐스탄, 터키 등

❹ 고용 우수기업

* 중앙 및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제출

❺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

<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>

지정 지역	산업	지정시기
전북 군산시	**자동차**	'18년 4월
거제시, 창원시 진해구, 통영시·고성군(이상 경남)영암군·목포시·해남군(이상 전남)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	**조선업**	'18년 5월

□ 문의처 : KOTRA 수출기업화팀 / 소재부품팀

구분	1 진입	2 발전
사업신청	담당자 : 김나현 사원 전화 : 02-3460-3499 이메일 : kim0119@kotra.or.kr	담당자 : 한송옥 대리/박욱상 사원 전화 : 02-3460-3257/7646 이메일 : songok.han@kotra.or.kr jimpark@kotra.or.kr
사업내용	담당자 : 황정숙 과장 전화 : 02-3460-7327 이메일 : hwang@kotra.or.kr	담당자 : 홍성우 PM 전화 : 02-3460-7663 이메일 : aquahong@gmail.com

다.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

□ **지원목적** : 5대 소비재 및 e커머스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판로 확대

□ **지원대상**

○ 분야 : 5대 소비재 **제조** 또는 해당품목 **e커머스 중소·중견기업**

- 5대 소비재 : 화장품·뷰티, 가공식품, 패션·의류, 생활·유아용품, 의약품
  * 제외대상 : 단순 유통, 무역상사
- e커머스 기업 : 해외 직접판매(역직구) 전문몰 보유 기업
  * 제외대상 :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(아마존, 이베이 등) 입점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, 국내 마켓플레이스(쿠팡 등) 입점하여 판매하는 기업

○ 우대기업

- ①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, ②對이란 제재 대상기업, ③신남방/신북방 진출(예정)기업, ④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, ⑤고용 우수기업, ⑥사회적 기업

①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조달내역(공고일 기준 2년 內) 등 관련 증빙 제출
② 對이란제재 대상기업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
③ 신남방/신북방 진출(예정) 여부는 사업신청 시 로드맵 상 목표시장으로 판단(별도 자료 제출 불요)
. 신남방 :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 + 인도
. 신북방 : 러시아, 중국, 몽골, 카자흐스탄, 터키 등
④ 규제 샌드박스 승인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, 중소벤처기업부) 증빙 제출
⑤ 고용 우수기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제출
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 제출

□ **지원규모 및 내용**

○ 지원규모(안) : 총 00개사 내외

구분	1 준비	2 진출	3 확대
사업목적	해외시장 진출 준비 지원	해외시장 진출 초기 단계 지원	현지 대형유통망 입점 등 정착지원
지원요건	아래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❶ 내수(수출 경험 전무) ❷ 초보('18년도 수출 10만불 미만) ❸ 수출 업력 5년 이내 기업	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❶'18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❷수출액 10만불 이상	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❶'18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❷수출액 50만불 이상
주요 서비스	통번역, 해외규격인증, 디자인 개발(홈페이지 구축, 카탈로그 디자인 등) 등 일반 해외마케팅 분야 전반	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, 홍보/광고(인플루언서 마케팅, 한류마케팅 등) 해외마케팅 전반	유통망 입점 단계별 지원활동 (고객조사, 제품 컨설팅, 판촉 행사 등)
바우처 총액	2,000만원	4,000만원	5,500만원
	국고 보조율 70%, 1,400만원 기업 분담 30%, 600만원	(중소기업) 국고 보조율 70%, 기업분담 30% (중견기업) 국고 보조율 50%, 기업분담 50%	

□ 세부지원

○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분석하고 목표시장 및 방법을 선정(로드맵 작성)

* '준비' 프로그램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

○ 로드맵 기반, KOTRA 또는 민간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

□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'19. 12. 9(월) ~ '19. 12. 27(금) 18시까지

○ 홈페이지 신청 www.exportvoucher.com (한글 www.수출바우처.com)

○ 신청 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명	내용
1	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, 사업신청서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, 인쇄 후 서명하여 스캔본 첨부
2	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(로드맵)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3	'16~'18년 재무제표증명원	홈텍스 출력본
4	'16~'19년 수출실적 증명서	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KTnet 발급본

* 상기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(신청서 화면에서 첨부)이며 제출거부, 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 제외,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

○ 유의사항 :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최대 2년 참여 가능으로, 이전에 2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신청불가

□ 추진 절차

○ 공고→ 신청·접수→ 1차 계량평가→ 2차 평가*→ 최종 선정(홈페이지상 확인 가능)→ 협약체결 및 로드맵 확정→ 사업 수행→ 정산

* 준비 단계 신청기업 : 1차 계량 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 실사를 통한 2차 평가 수행

* 진출·확대 단계 신청기업 : 1차 계량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발표평가 예정 (2차 발표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하며,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상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제출 시 정확한 정보 기재요망)

□ 문의처 : KOTRA 수출기업화팀 / 소비재전자상거래실

○ 준비 프로그램(수출기업화팀)

- (사업신청) 김나현 사원 02-3460-3499, kim0119@kotra.or.kr
- (사업내용) 황정숙 과장 02-3460-7327, hwang@kotra.or.kr

○ 진출, 확대 프로그램(소비재전자상거래실)

- (사업신청) 김한솔 사원 02-3460-3347, ge_cgsk@kotra.or.kr
- (사업내용) 김소영 대리 02-3460-7747, ge_cgsk@kotra.or.kr

라.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

□ **지원목적 :** 서비스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서비스 해외진출을 활성화

□ **지원사항 :** 서비스기업의 진출 타겟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, **현지 KOTRA 서비스거점 무역관의 밀착지원**과 특허·지재권, 홍보·광고, 전시회, 법무컨설팅, 디자인개발, 해외규격 인증 등 **바우처 메뉴판의 수출지원서비스 이용을 동시에 지원**

□ **지원대상 :** 서비스분야 중소·중견기업 **00개사** 내외

* **콘텐츠**(AR·VR, 애니메이션, 웹툰, 게임, 전자출판, 캐릭터), **교육**(이러닝, 학원, 교재), **프랜차이즈**(외식업, 이미용, 키즈놀이터), **보건**(외국인환자유치, 병원), **스마트물류**, **금융**(핀테크), **SW**(클라우드, 빅데이터, IoT), **관광**(AR.VR 관광콘텐츠, 관광정보 앱,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), **기타서비스** ※제조업, 단순 유통, 무역상사 지원 제외

** 기업 신청현황에 따라 서비스분야별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

<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>

① 직전년도 매출 1조 이하의, 콘텐츠, 교육, 프랜차이즈, 보건의료, 스마트물류, 금융, SW, 관광,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기업

② 고용 증가기업 우대 (‘18년, ‘19년 11월기준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)

③ 일본 수출규제/이란제재 피해기업 우대

□ **지원규모**

구분	바우처 발행액	국고지원	기업분담금	국고보조율
중소기업	42,300천원	29,610천원	12,690천원	70%
중견기업	55,700천원	27,850천원	27,850천원	50%

□ **제출서류**

○ 사업계획서(제시된 목차와 양식 준수), 중소기업확인서(또는 중견기업확인서), ‘18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발급 또는 감사보고서), 서비스 수출실적(‘18년, ‘19년)

* 사업계획서 목차 및 양식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화면에 첨부

**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에 따라 국고보조율 결정 ('19. 4. 1 ~ '20. 3. 31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제출)

<서비스 수출실적 인정기준>

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발급된 '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확인' (그외 KITA 발급증명서 미인정)

② 상기 증명서 미보유기업은 서비스수출계약서+입금확인내역 제출로 인정 (계약서만 제출한 경우 미인정, 서비스가 아닌 상품 수출실적은 증빙 제출 불요)

③ 외국인환자유치 실적

④ 공동제작 실적(계약서)

※ 상기외 실적증빙은 미인정

□ 추진일정

○ 공고 → 온라인신청 → 1차 서류심사(1.13) → 2차 발표심사(1.15~17/기업당 10분 발표, 5분 질의응답) → 고득점순 선정(선정기준표 참고) → 분담금 납부 → 협약체결 → 사업수행('20.2.1일부터 1년)

* 1차 서류심사 통과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

** 선정기준표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화면에 첨부

□ 신청기간 : '19. 12. 9(월) ~ '19. 12. 27(금) 18시까지

*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신청접수

□ 문의처 : KOTRA 지식서비스팀 박은경 과장, 전상아 사원

○ 02-3460-7609, 3251/ pek@kotra.or.kr, jeonivory@kotra.or.kr

<끝>